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등급)**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3. 판매 회사 : <http://www.franklintempleton.co.kr> 및 <http://dart.fss.or.kr> 참조
4. 작성 기준일 : 2011년 3월 31일
5. 효력이 발생한 날 : 2011년 5월 0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 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http://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모집(판매)예정기간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
 - (1) 연평균 수익률
 - (2) 연도별 수익률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가. 기준가격 산정
 -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IV. 요약재무정보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펀드코드:52890)
- 2. 모집예정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 주 1)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 (1)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2)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 (3)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4)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국내외에서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국내외에서 발행된 글로벌 주식형, 혼합형 및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등(이미징 마켓의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이하 동일)에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서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벤치마크 : MSCI All Country Index(60%)+Barclays Capital Total Return Bond Index(30%)+KBP_Call(10%)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해 글로벌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글로벌 혼합형 집합투자증권, 글로벌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이머징 마켓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등 다양한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40%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
- 투자 대상 집합투자증권은 당해 펀드의 운용 규모, 과거의 운용 성과, 투자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 기준 통화가 외국 통화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부분 해지(투자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기준 통화 전체에 대한 환해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펀드가치변동이나 펀드편출입으로 자산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해정 거래도 이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나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투자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비중은 사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며, 편입 당시의 거시 경제 환경, 금융시장 환경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에서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투자신탁으로서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4.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

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도록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 일반위험

구 분	투 자 위 혐 의 주 요 내 용
수익증권 등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및 국내의 주식과 채권등을 주요 자산으로 가진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함에 따라 그러한 집합투자증권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통화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피투자 집합기구의 기준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 환헤지를 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헤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환헤지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특수위험

구 분	투 자 위 혐 의 주 요 내 용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환매일까지 국내투자보다 오랜 시간 소요됩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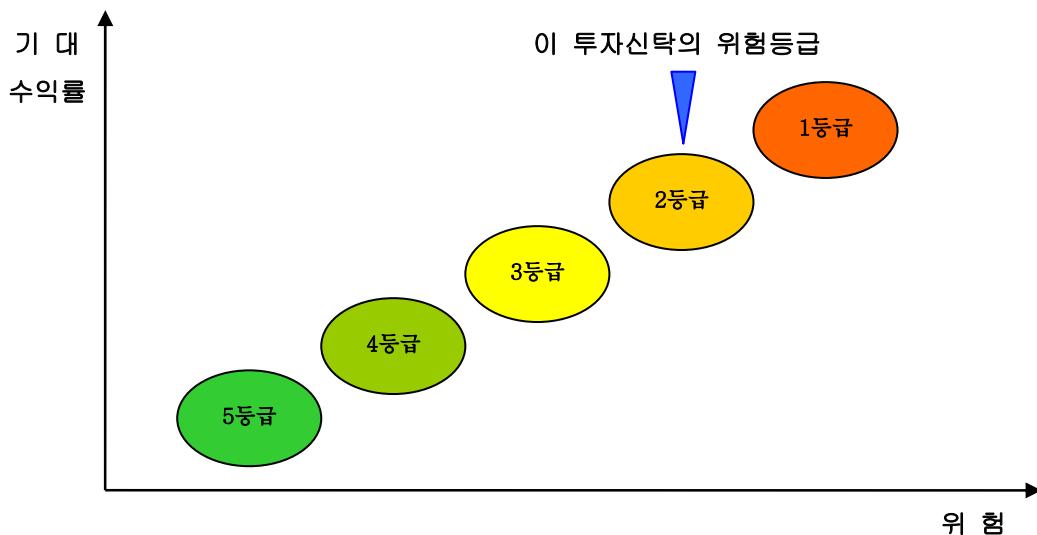
(3)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혐 의 주 요 내 용
유동성위험	채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 수익자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 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

	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조기환매위험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선택재산으로 귀속됩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5가지 투자위험등급들 중에서 2등급에 해당하는, 당사의 투자위험등급상 두번째로 높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는 고객들중에서 비교적 높은 투자위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그 변동성의 대가로 주어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과 채권투자로부터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주식형펀드 대비 절반정도의 투자위험을 지니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당사 자체 투자위험등급기준]

위험등급	상대적 위험수준(주1)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가장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펀드의 자산을 주로 국내주식, 해외주식 또는 국내외 주식에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투자위험 등급입니다. 주식이 아닌 위험 자산에 주로 투자하더라도 예상수익률변동성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와 비슷할 경우 이 위험등급에 해당됩니다. 주식에 주로 투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당사의 경우 대체로 80% 이상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 위험등급에 해당되는 개별 펀드들의 예상수익률변동성은 아래의 다른 위험등급의 경우 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Emerging Markets), 선진국이 아닌 시장, 특정 섹터나 업종들, 코스닥시장처럼 특정목적을 가진 시장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은 국내시장이나 선진국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보다 예상수익률변동성이 훨씬 클수 있습니다.

		다.
2등급	높은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두번째로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주로 주식과 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에 함께 투자하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대체로 40~60% 내외인 주식혼합형펀드들이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그 정도일 때에 해당됩니다.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자산들에 주로 투자하더라도 그러한 주식혼합형펀드와 유사한 예상수익률변동성을 보인다면 이 위험등급에 해당됩니다.
3등급	중간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세번째로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주로 주식과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 및 유동성자산들에 함께 투자하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대체로 30% 이하인 채권혼합형펀드, 투자등급 이하 국내채권 등에 의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국내 고위험고수익채권형펀드, 해외의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들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채권형펀드들이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에 주로 투자한다는 것은 반드시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펀드가 투자등급 이하의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으므로 이점은 중권신고서의 관련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4등급	낮은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 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네번째로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투자등급 이상의 우리나라 채권과 유동성 등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채권형펀드들이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예상치 못한 투자등급의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투자등급 이하의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도 이 위험등급에 해당됩니다.
5등급	매우낮은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가장 낮은 위험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국공채 또는 높은 투자등급의 채권이면서 만기가 매우 짧은 채권들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주로 단기집합투자기구(MMF)들이 이 등급에 해당됩니다. 은행 CD와 비슷한 예상수익률변동성을 가진 단기채권형펀드들도 이 등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1) 당사의 위험등급은 펀드들의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분류한 것입니다.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의 표현에서 "낮은", "매우낮은" 등의 의미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당사의 5가지 위험등급들을 서로 비교할 때에 그 상대적 높고 낮음을 의미합니다. "매우낮은위험"에 해당하는 위험등급 5의 경우에도 투자시기와 투자기간에 따라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퇴직연금 등의 연금형 펀드들과 같이 고객의 투자기간이 충분히 길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의 경우, "장기투자 및 적립식 투자방법에 따라 수익률 변동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반영하여, 상기에 의한 등급보다 낮은 위험 등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3) 상기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의 내부기준에 대한 예시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2011.03.31.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		
김동일	1962년	CIO	57개	13,384억	삼성생명(1987-1996) 삼성투신운용(1996-1999)	-

					KTB자산운용(1999-2000) 리젠틴자산운용(2000-2001) 당사 채권운용CIO(2001-현재)	
백상훈	1972년	부장	44개	11,131억	당사 컴플라이언스팀(1999-2000) 당사 채권운용팀(2000-2008) 당사 FTMIS팀(2008-2009.4) 당사 채권운용팀(2009.5-현재)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수익률은 투자설명서 또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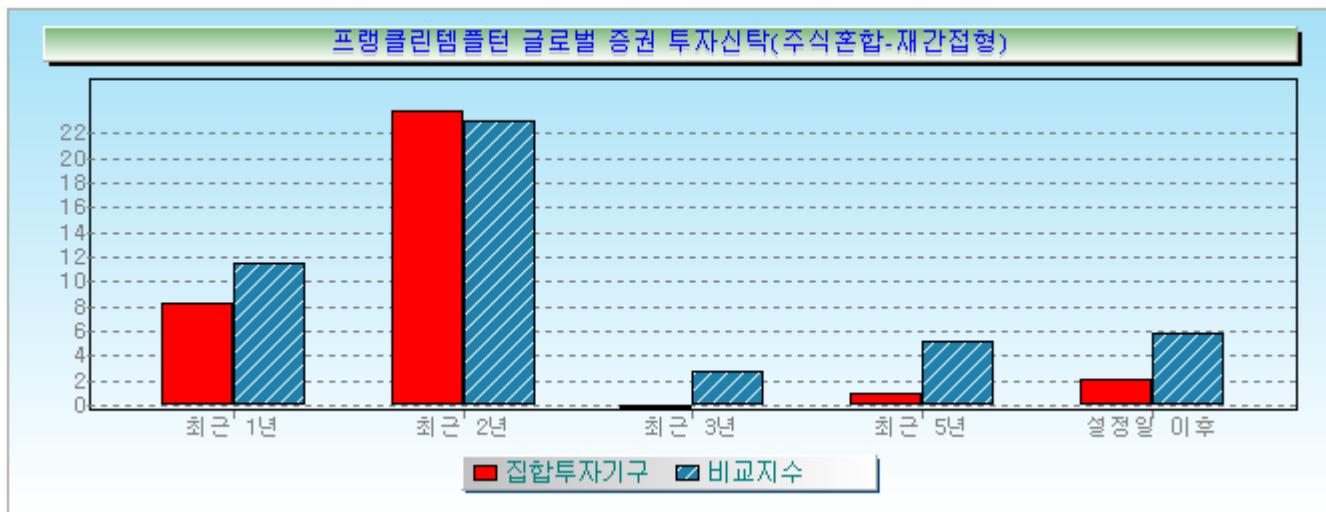
(1) 연평균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	기간	(단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10.04.01~ 11.03.31)	(09.04.01~ 11.03.31)	(08.04.01~ 11.03.31)	(06.04.03~ 11.03.31)	(05.12.05~ 11.03.31)
	집합투자기구	8.28	23.81	-0.31	0.98	2.12
	비교지수	11.5	23	2.73	5.19	5.89

주1) 비교지수 : MSCI All Country Index(60%) + Barclays Capital Total Return Bond Index(30%) + KBP_Call(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별 수익률이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단위:%)						
집합투자기구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10.04.01~ 11.03.31)	(09.04.01~ 10.03.31)	(08.04.01~ 09.03.31)	(07.04.01~ 08.03.31)	(06.04.01~ 07.03.31)
	집합투자기구	8.28	41.57	-35.37	-4.34	10.8
	비교지수	11.5	35.68	-28.34	5.09	13

주1) 비교지수 : MSCI All Country Index(60%) + Barclays Capital Total Return Bond Index(30%) + KBP_Call(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I. 매입·판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
판매수수료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판매시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집합투자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3000%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1000%
신탁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00%
기타비용(사유발생시) ¹⁾	순자산총액의 연 0.0158%
총 보수·비용 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4958%
합성 총 보수·비용 비율⁵⁾	순자산총액의 연 1.4958%
증권거래비용 ²⁾	순자산총액의 연 0.0295%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율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1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4) 총 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5)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은 알 수 없으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를 포함하는 별도의 총보수·비용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

(단위/원)

집합투자기구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프랭클린템플턴글로벌주식재간접투자신탁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7,059	495,128	867,850	1,975,471
프랭클린템플턴글로벌주식재간접투자신탁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²⁾	157,059	495,128	867,850	1,975,47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 과세

※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십시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공고·개시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 다만, 최초설정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가.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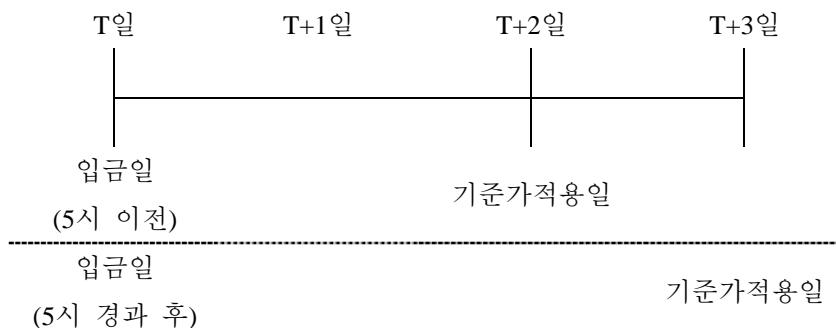
①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1,000원)을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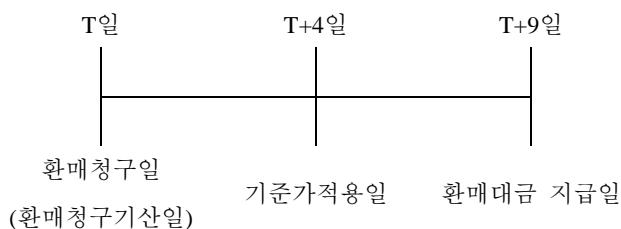
나. 환매

①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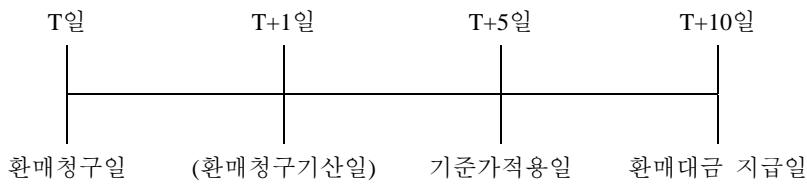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②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나)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1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③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없음

*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⑤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제5기	제4기	제3기
	2010-12-04	2009-12-04	2008-12-04
운용자산	7,886,801,558	11,915,227,410	6,238,673,386
증권	6,783,013,761	10,877,533,899	3,915,947,022
파생상품	-135,338,267	191,871,868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739,125,664	445,821,003	2,322,726,364
기타 운용자산	500,000,400	400,000,640	
기타자산	-146,198,320	-1,240,449,532	3,623,221,019
자산총계	7,740,603,238	10,674,777,878	9,861,894,405

운용부채			
기타부채	150,093,099	113,280,135	681,794,093
부채총계	150,093,099	113,280,135	681,794,093
원본	8,735,595,541	12,939,540,181	14,652,652,095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1,145,085,402	-2,378,042,438	-5,472,551,783
자본총계	7,590,510,139	10,561,497,743	9,180,100,312
손의계산서	제5기 2009-12-05~ 2010-12-04	제4기 2008-12-05~ 2009-12-04	제3기 2007-12-05~ 2008-12-04
운용수익	652,112,847	2,757,925,713	-6,058,577,730
이자수익	13,330,554	16,243,985	54,082,065
배당수익			
매매/평가차익(손)	637,922,649	2,740,473,320	-6,112,951,262
기타 수익	859,644	1,208,408	291,467
운용비용	136,476,263	149,939,212	256,249,443
관련회사 보수	132,427,776	142,694,109	237,168,514
매매수수료	4,012,972	6,711,486	17,438,580
기타 비용	35,515	533,617	1,642,349
당기순이익	515,636,584	2,607,986,501	-6,314,827,173
매매회전율(%)			